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 원)

회 계 별	2022 기정예산	2022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511,420	1,547,105	35,685	2.4%
일반회계	3,266	3,266	-	-
특별회계	1,508,154	1,543,839	35,685	2.4%
도시개발	1,508,154	1,543,839	35,685	2.4%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회 계 별	2022 기정예산	2022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총 계	1,661,056	1,696,741	35,685	2.1%
일반회계	1,450,091	1,485,776	35,685	2.5%
특별회계	210,965	210,965	-	-
주택사업	119,437	119,437	-	-
도시개발	91,128	91,128	-	-
균형발전	400	400	-	-

II.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부서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총 계				1,406,112	1,441,797	35,685
1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시활성화과)	기타회계전출금	1,406,112	1,441,797	35,685

Ⅲ.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2.4%(35,685백만 원), 세출예산은 2.1%(35,685백만 원) 증추경되었음.

〈2022년 균형발전본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기정예산	'22년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세입	1,511,420	1,547,105	35,685(2.4%)
	세출	1,661,056	1,696,741	35,685(2.1%)
일반회계	세입	3,266	3,266	-
	세출	1,450,091	1,485,776	35,685(2.5%)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	-	-
	세출	119,437	119,437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508,154	1,543,839	35,685(2.4%)
	세출	91,128	91,128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	-	-
	세출	400	400	-

〈2022년 균형발전본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도시개발특별회계(총계)	1,508,154	1,543,839	35,685
세외수입	17,579	17,579	-
보조금	3,516	3,516	-
지방채	16,000	16,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1,059	1,506,744	35,685
순세계잉여금	64,947	64,947	-
기타회계전입금	1,406,112	1,441,797	35,685

- 균형발전본부 추경예산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17개 사업 35,685백만 원)하여 세입 재원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입금인 재산세 도시지역분(70%) 증가액을 기타회계 전출금(일반회계 세출, 35,685백만 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도시개발 특별회계 추경(증액) 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 ⇨	일반회계 세출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추경 부서 (예산담당관 총괄)
항 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가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사업(17건) 35,685백만원

※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가액은 2021 회계연도 세입 예산 보다 초과 징수된 재산세를 이번 추경을 위해 결산 전 미리 계상한 금액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각 추경 사업 부서에서 편성하고, 세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도시활성화과)에서 편성하며, 균형발전본부의 세출사업 추경예산은 없음.

〈2022년 균형발전본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일반회계(총계)	1,450,091	1,485,776	35,685
정책사업비	42,778	42,778	-
행정운영경비	1,105	1,105	-
재무활동비	1,406,207	1,441,892	35,685
국고보조금반환	95	95	-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406,112	1,441,797	35,685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령 및 조례(붙임 1 참조)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액”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등으로 구성¹⁾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사업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비 등으로 집행됨.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세출용도〉

세입 재원	세출 용도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
2. 정부의 보조금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3.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시장이 인정하는 유치시설 사업비 지원
4.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임대료 및 매각수입	4. 공사비의 보조 및 용자
5.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5.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6. 과태료(변상금 및 위약금)	6.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 용자회수금·이자수입금 등	7.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8. 차입금	8. 그 밖의 특별회계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도시교통 실 및 공공개발기획단 등 6개 실·국·본부의 17개 사업예산에 집행될 예정이며, 사업별 추경예산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붙임 2 참고)

1) 전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이상임.

(단위 : 천원)

비 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377,637,900	2,428,473,739	1,920,898,670	2,259,016,213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	941,412,866 (68.3%)	1,007,059,427 (41.5%)	994,461,800 (51.8%)	1,310,636,621 (58.0%)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한 승 윤
연 락 처	02-2180-8207
이 메 일	syhan@seoul.go.kr

[붙임 1] 관계법령 및 조례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
-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 ② 법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9.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11.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②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계획되었으나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붙임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예산액	국비	예산액	국비	예산액	국비
계	193,533	70,859	156,849	69,859	36,685	1,000
경 제 정 책 실	3,000	-	-	-	3,000	-
캠퍼스타운 취창업특화과정 추진	3,000	-	-	-	3,000	-
도 시 교 통 실	31,298	-	26,835	-	4,463	-
가공배전선 지중화	31,298	3,000	26,835	3,000	4,463	-
문 화 본 부	100,424	67,859	97,724	66,859	2,670	1,000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2,803	-	1,970	-	833	-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342	-	242	-	100	-
풍납토성 복원사업(토지보상)	94,686	66,280	93,257	65,280	1,429	1,000
해피동 전사내내터 주변 상벽 위함간 해체복원	2,593	1,579	2,255	1,579	338	-
공 공 개 발 기 획 단	9,147	-	4,100	-	5,049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5,562	-	4,100	-	1,462	-
국고보조금 반환	3,587	-	-	-	3,587	-
안 전 총 괄 실	44,803	-	28,190	-	16,613	-
울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14,023	-	9,500	-	4,523	-
금호로 확장	800	-	500	-	300	-
자차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	13,308	-	8,700	-	4,608	-
도림천복개(좌안)보수	800	-	500	-	300	-
외발산지하차도 보수	1,846	-	-	-	1,846	-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9,990	-	5,990	-	4,000	-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	3,742	-	3,000	-	742	-
공단IC 보수공사	294	-	-	-	294	-
푸 른 도 시 국	4,860	-	-	-	4,860	-
공원 내 책쉼터 조성	4,860	-	-	-	4,860	-

자료 : 서울시 기획조정실